

법제처 심사 전

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2024. 1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  
(농업기반과)

## 1. 개정이유

- 가.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적용중인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을 타 건설분야 대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공통기준인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'예산안 편성지침'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
- 나. 농어촌정비사업의 민간개방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, 설계·감리 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등 기준 정비(안 제60조제1항)
  - 1) 타 건설분야와 달리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적용중인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을 범부처 공통기준인 「국가재정법」 제29조에 따른 '예산안편성지침'을 준용하도록 정비
- 나.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삭제(안 별표5)
  - 1) 안 제60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대가기준을 정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기준 삭제
- 다. 부칙 경과규정 신설(안 제1조, 제2조)
  - 1) 시행일은 세부기준 고시를 위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
  - 2)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가 착수되거나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 명확화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불임(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

##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기준은 별표5와 같다”를 “및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「국가재정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정하고, 이를 고시한다”로 한다.

별표5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 설계의 착수,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0조(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)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| 제60조(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 및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「국가재정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정하고, 이를 고시한다. |
| ②·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 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세부 설계의 착수,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